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18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이용우·김원이·이학영

박홍배 · 임오경 · 김선민

전진숙 · 임광현 · 황명선

강유정 · 모경종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,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,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, 제품의 환경성 개선,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수 있고,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 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·수입·가공·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(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·수입·가공·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녹색기업의 지정 등)	제16조의2(녹색기업의 지정 등)
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	①
현저한 감소, 자원과 에너지의	
절감, 제품의 환경성 개선, 녹	
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	
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	
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	
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지정	
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	
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석탄, 석유, 천연</u>
	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
	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
	채굴・수입・가공・판매의 사
	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
	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
	<u>정할 수 없다.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